

기부금영수증발급합계표

사업연도 (과세기간)	. . ~ . .
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1.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 (공익법인등)	① 법인명(단체명)		② 대 표 자	
	③ 사업자등록번호 (고유번호)		④ 전화번호	
	⑤ 소재지			
	⑥ 유형 (해당란에 √)	☐ 정부등 공공 ☐ 교육 ☐ 종교 ☐ 사회복지 ☐ 자선 ☐ 의료 ☐ 문화 ☐ 학술 ☐ 기타		

2. 해당 사업연도(과세기간)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

(단위: 원)

⑦ 구 분 ⑪ 기부자	⑧ 합 계		⑨ 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(종전 법정기부금)		⑩ 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(종전 지정기부금)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법 인						
개 인						
합 계						

「법인세법」 제112조의2제3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제출인

세무서장 귀하

작성 방법

- 이 서식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(과세기간)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- ⑥ 유형란: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(공익법인등)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.
- ⑧ ~ ⑩ 란: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총 발급금액을 적습니다.
-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(「법인세법」 제75조의4제2항 및 제112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)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본 서식을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.